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03월 19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다산동 주민센터 담당자 : 이 민영 문의전화 : 02-3396-6748)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서**	서** 1986-08-01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80-11-30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8길	무단전출
고**	고** 1967-01-20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	무단전출
고**	강** 1995-03-31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	무단전출
고**	강** 1997-07-30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	무단전출
한**	한** 1974-06-29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5길	무단전출
전**	전** 1965-08-24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5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79-03-30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83-09-22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무단전출
서**	서** 1961-08-26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	무단전출
정**	정** 1978-08-18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다길	무단전출
소**	소** 1987-04-20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다길	무단전출
강**	강** 1945-03-08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	무단전출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03월 19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다산동 주민센터 담당자 : 이 민영 문의전화 : 02-3396-6748)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2018년 03월 12일

다산동장 